

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년 1월 13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3년 1월 13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02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(2003년1월18일) 상정
- 제102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(2003년1월18일)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)

개정이유

- 정신보건센터라는 명칭은 주민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어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변경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- 제명 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및운영조례로 조정함
- 조례 제명 변경에 따라 관련 용어를 조정함(안 제2조, 제4조 및 제6조)
- 건강증진센터의 위치를 신설함(안 제2조의2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<input type="radio"/> 없 음	<input type="radio"/> 없 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 음

나. 반대토론

- 없 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-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

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제 84 호
의 결 년 월 일	2003. 1. 21 (제102회)

제출년월일 : 2003. 1. 13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개정이유

- 정신보건센터라는 명칭은 주민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어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변경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, 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제명 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및운영조례로 조정함.
- 나. 조례 제명 변경에 따라 관련 용어를 조정함(안 제2조, 제4조 및 제6조)
- 다.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치를 신설함.(안 제2조의2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”를 “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및운영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부천시정신보건센터(이하 “정신보건센터”라 한다)”를 “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(이하 “정신건강증진센터”라 한다)”로 하고, 제2조·제4조 및 제6조중 “정신보건센터”를 “정신건강증진센터”로 한다.

제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 2(위치)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는 원미구보건소내에 둔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제2조의2 신설 규정은 원미구보건소 신축이전시까지 시장이 정하는 곳에 둔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</u>	<u>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및운영조례</u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정신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<u>부천시정신보건센터</u>(이하 "정신보건센터"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조직) ①정신보건센터 운영 및 계 반사항에 대하여는 원미구보건소장이 관리한다. ②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하여 정신 과 전문의, 정신보건전문요원(정신보건 간호사, 정신보건사회복지사, 정신보건 임상심리사),보건소 인력등이 업무를 수행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..... <u>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</u>(이하 "정신건 강증진센터"라 한다).....</p> <p>제2조(조직) ①정신건강증진센터..... ②정신건강증진센터</p>
<u><신 설></u>	<u>제2조의 2(위치)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</u> <u>는 원미구보건소내에 둔다.</u>
<p>제4조(업무)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~ 10. (생략)</p>	<p>제4조(업무) 정신건강증진센터는..... 1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이용료 면제)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할 경우 <u>정신보건센터</u> 이용에 소요 되는 비용을 면제한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	<p>제6조(이용료 면제)<u>정신건강증진센터</u>....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